

# 서천군민체육대회 경기운영 규정

제정 2021. 10. 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천군민체육대회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책임)** 서천군민체육대회 (이하 “군민체육대회” 라 한다)의 모든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장 책임 하에 이를 진행한다.

**제3조(경기규칙)** 군민체육대회의 경기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을 따른다.

**제4조(개최시기)** 군민체육대회는 짝수년도 하반기 중에 개최하며 대회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기종목)** 군민체육대회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읍·면 대항전으로 실시
2.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
  - 가. 기록경기: 육상(4), 고무신 멀리 차보내기, 모래가마니 들고 오래서 있기
  - 나. 토너먼트경기: 족구, 씨름, 줄다리기
    - 6개팀 이상 출전 종목은 예선 경기를 실시하고, 6개팀 미만 출전 종목은 결선경기 실시 (조편성·대진표는 임시총회 종료 후, 육상 코스 추첨은 당일 실시)
3. 화합종목 : 노래, 댄스, 사물놀이, 에어로빅 등(13개 읍·면 장기자랑(읍·면 1개팀))

**제6조(경기기록 관리)** 군민체육대회의 모든 경기기록은 회원종목단체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책임자가 확인 서명하여 대회본부 기록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7조(경기방법)** 군민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육상
  - 가. 참가인원
    - 100m : 2명(남1, 여1)
    - 400mr : 4명(여)
    - 연령별 400mr(여자), 600mr(남자) : 8명(남4, 여4)
    - 400mr(읍면체육회장/기관단체장) : 4명 [읍면체육회장/읍면장 당연출전(2명)]
  - ※ 당연출전자 미출전시 순위에서 제외됨

※ 기관단체장 (서방소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등) 출전이 어려울 경우 읍면체육회 임원이 출전 가능함

나. 육상트랙경기는 대한 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연령별 계주 및 방법

- 400mr(여자) : 30대 ⇒ 50대 ⇒ 40대 ⇒ 50대 순으로 실시한다.

- 600mr(남자) : 30 · 40대(200m), 50 · 60대(100m)를 달린다.

※ 릴레이 순서 : 60대 ⇒ 50대 ⇒ 40대 ⇒ 30대

- 연령을 낮추어 출전할 수 있다.

- 400mr (읍면체육회장/기관단체장) : 읍면체육회장 ⇒ 선수(기관단체장) ⇒ 선수(기관단체장) ⇒ 읍면 장

## 2. 족구(남자부 경기)

가. 참가인원 : 남자 4명(후보 2명)

나. 경기방법

o 예선 : 1세트 21점씩(1선승제 : 11점에서 코트교체)

o 준결·결승(11점 : 3전 2선승제)

## 3. 씨름(혼성)

가. 참가인원 : 5명(후보 각 연령대별 1명씩)

o 남자부 : 30대 1명, 40대 1명, 50대이상 1명

o 여자부 : 20대 1명, 30대이상 1명

나. 경기방법

o 경기진행순서 - ①번 남자부 50대 ②번 여자부 30대 ③번 남자부 30대  
④번 여자부 20대 ⑤번 남자부 40대

o 5전 3선승제 - 3승을 선취한 팀이 승리

o 한 판당 경기시간 2분이며, 연령을 낮추어 출전할 수 있다.

o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승리→체중계 비치

## 4. 줄다리기(화합종목)

가. 참가인원 : 15명(남5, 여10)

나. 경기방법 : 양편을 중심으로 1m간격의 결승점까지 15초 이내에 먼저 당기는팀이 승리하며, 15초가 지나 결승점까지 당긴 팀이 없을 경우 많이 당긴 팀이 승리 (3전 2선승제)

## 5. 고무신 멀리 차 보내기

가. 참가인원 : 6명(65세 이상의 남3, 여3)

나. 경기방법 : 경기전 신분증 확인

① 신고 있는 신발을 공중으로 차서 멀리 보냄

② 신발을 찬 지점에서 신발이 날아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며 2회 시도하여 그 중 많이 날아간 기록을 점수에 반영

③ 6명의 선수가 획득한 거리를 합산하여 우승팀으로 결정

- ※ 고무신은 남자 275mm, 여자는 250mm 신발 착용
- ※ 측정선은 1m단위로 표시하고 신발이 측정선에 닿았을 경우 상위 측정거리를 획득한 것으로 함.
- ※ 측정선 밖으로 고무신이 나갔을 경우 1회 시도한 것으로 하며, 2회 연속 측정선 밖으로 나가면 실격

## 6. 모래가마니 들고 오래 서 있기

가. 참가인원 : 각 읍·면별로 남·여 1명씩 출전

나. 경기방법

- ① 모래가마니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
- ② 모래가마니의 무게는 남자 20Kg, 여자 15Kg
- ③ 토너먼트 경기가 아닌 13개 읍면 남·여부를 구분해서 한 번에 실시하 여제일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을 우승자로 결정

※단, 모래가마니가 머리위에 닿으면 그때까지의 기록으로만 인정

## 7. 장기자랑

가. 참가인원 : 각 읍·면별로 1개팀 출전

나. 참여부분 : 노래, 댄스, 사물놀이, 에어로빅 등

다. 경기방법

- ① 장기자랑은 5분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심판 및 경기규칙)** 심판은 군체육회에서 위촉하여 구성하되 대한육상경기연맹 심판법과 각 경기별 심판규칙에 의한다.

1. 경기 규칙은 서천군체육회 경기 규칙에 의함
2. 육상경기중 스파이크 착용은 금함(일반부는 못 없는 스파이크 착용 가능)

**제9조(채점)** 군민체육대회의 채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채점방법 : 채점은 「별표1」 채점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참가자격)** 군민체육대회는 각 읍·면체육회에서 선발한 선수 및 단체팀이 참가한다. 각 읍·면체육회는 군민체육대회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회 개최 전년도 12월31일이전부터 본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2. 일반부 참가선수는 21세 이상인 자
3. 주민등록지 출전을 원칙으로 하며, 직장인은 직장소재지 읍·면으로 출전 할 수 있으나 주소지가 서천군에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아마추어 선수에 한하여(육상은 해당년도 대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 일반부에 한함)출전 할 수 있음
5. 1인 2종목 이내만 출전 가능하며 계주 경기에만 추가 출전 할 수 있음

**제11조(참가신청)** 읍·면·동체육회장은 선수 및 임원을 대회요강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본회에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 신청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마감 : 별도공지
2. 신청장소 : 방문 또는 전자메일접수
  - 군체육회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1 (서천군생활체육센터 2층)
  - e-mail : mayhong82@naver.com
3. 참가요령 : 각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4. 구비서류
  - 가. 참가신청서 2부  
(직장소재지 읍·면으로 출전하는 자는 소속란에 직장명만 기재)
5. 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않으며 일단 접수된 서류는 변경 및 반환하지 않음

**제12조(시상)** 군민체육대회의 시상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상
  - 1위 : 우승기, 우승컵
  - 2위, 3위, 화합상, 질서상, 응원상, 감투상 : 우승컵
2. 종목별(개인별) 시상
  - 1위, 2위, 3위 : 상품
3. 종목별(단체별) 시상
  - 1위, 2위, 3위 : 상품

**제13조(기타사항)**

1. 경기는 읍·면 체육회장 책임 아래 이를 시행
2. 경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 읍·면체육회장만이 할 수 있으며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
3. 심판부장의 판정에 대한 항소는 당 경기대회 대회장이 이를 해결  
대회장의 판정에 대한 이의는 할 수 없음
4. 출전선수에 대한 자격에 대하여는 심판부장이 처리
5.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경기의 성적을 무효 처리
6. 최종 종합득점에 있어 동점이 있을 경우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연령별400mr(여자)순으로 상위 성적인 읍·면을 우선하여 결정
7. 대회진행요원(진행부,심판부)들에게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끼를 당일 지급
8. 출전선수 부상시 응급처치는 대회본부에서 조치하고 이후는 출전 읍·면에서 모든 치료를 책임짐 (해당읍·면 종목별 출전선수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 필수)

**제14조(보칙)** 군민체육대회 경기 운영 및 종목변경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변경사항은 읍·면체육회 대표자 회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